

2026학년도 수지초등학교 생활교육부 안내 자료

2026.2.19.(목)

1. 본교 학생생활규정 및 생활교육 사안 처리 안내

- ‘수지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2025.12.19.개정) 일부 발췌

제26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학생은 학교 등교 시에 휴대전화를 포함한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등교할 수 있다. 단, 등교 후 전원을 끈 상태로 가방에 넣어 보관하고 학교 전까지 교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잃어버릴 시 본인이 책임진다.
- ② 휴대전화를 포함한 스마트기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해당 교육 활동에 근거하여 교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불가피하게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허가한 경우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④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31조 【조언】

-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32조 【상담】

-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 【주의】

-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34조 【훈육】

-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 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분리 좌석(교탁이나 교실 앞 주변 등)	교사의 판단에 의해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교실 뒤 주변 등)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교사는 학생의 반성 정도를 판단하여 복귀 지시	
3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를 거부하거나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정된 장소(개방된 교실 앞문 등) ※분리 시간은 수업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교실 내 분리 좌석을 교실 밖으로 이동 가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타인의 신체에 위해가 갈만한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민원면담실 , 상담실 등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인솔자가 학생을 인솔하여 교무실로 이동 교무실에서 학생 지도 담당자와 분리장소 확인 후 분리 실시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E 학습터 학습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① 3호 나 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교실, 민원면담실 , 상담실 등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점심시간 중 분리할 경우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인솔자: ① 지원인력(행정실무사, 교육청 지원인력 등) ② 학교장 또는 교감 또는 상담교사 등 학생 지도 담당자: ① 학교장 또는 교감 또는 상담교사 ② (① 번 대상자 부재시) 해당 시간에 수업이 없는 교사(※ 해당 학년 교사 우선 배정) ※ 4호 지도에서의 학생 지도 담당자: 위의 학생 지도 담당자 외에도 담임교사, 학폭담당교사, 학폭담당부장 등 해당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⑧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⑨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3호),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4호)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⑪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34조제1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할 수 있음을 알림 · 2회차: 주의와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물품은 수업 종료 후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개심제비탄 등	1. 보통의 경우: 1~3 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 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2. 사안이 중대하여 물품 보관이 필요한 경우: 미정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⑬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⑭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35조 【훈계】

-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36조 【보상】

-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37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 【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52조 【징계의 종류】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53조 【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4. 학교 내의 봉사의 예

- 1) 학교환경 미화작업 2) 교사들의 업무보조
- 3) 교재·교구 정비 4)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 5) 마음 고르기 프로그램(반성문, 편지쓰기, 독서 치료 등)

② 사회봉사

1. 학교 정규 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실시하며 하루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 1)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로 목표로 하는 기관
- 2)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4. 사회봉사의 예

-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 질서 유지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 특별교육 이수

1.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이수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4.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는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제54조 【선도의 기준】 선도 유형별 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항	내 용	선도 기준			
			학교 내의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인수	출석 정지
예절	1	교직원의 훈계에 불응한 학생	○	○	○	○
	2	수업 시간 중 지속해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	○	○	○	○
	3	교원 외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등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	○	○	○	○
	4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거나 신체적 위하나 위압을 가한 행위	○	○	○	○
준법	5	도박을 한 학생	○	○	○	
	6	공문서를 위조·변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7	학교에 무단침입하거나 학교의 공공기물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8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9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10	학생 물품 분리 조치 이후에도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행동하는 학생	○	○	○	○
	11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	○
	12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
	13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14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
	15	불온문서(청소년 금지 동영상, 청소년 금지 인터넷 사이트 주소 포함)를 상습적으로 소지,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
	16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는 학생(사이버 공간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포함)	○	○	○	
수업 및 평가	17	교원과 강사의 허락 없이 교육활동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스마트기기를 상습적으로 사용한 학생	○	○		
	18	훈계 조치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	○	○	○	○
	19	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
	20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 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
	21	미인정 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체험학습 연장으로 인한 미인정 결석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미인정 결석인 경우는 제외)	○	○	○	
	22	미인정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석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23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기타	24	선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
	25	그 밖에 법률에 위반하여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	○	○	○	○
	26	교외에서 학교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